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김 용 범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7. 5. 16.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黙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206호로 2017년 5월 11일 김용범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결산 ·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재정법」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「지방회계법」이 제정(2016.5.29.)되고,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이 시행(2016.11.30.)됨에 따라, 근거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시행('16.11.30.)에 따라 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근거법 개정 (안 제2조)
- 나. 예비비로 사용 금액 명세서 의회 제출기일 개정 (안 제3조 제1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·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재정법」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「지방회계법」이 제정(2016.5.29.)되고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이 시행(2016.11.30.)됨에 따라, 근거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

O 주요내용은

- 안 제2조는 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에 대한 근거법규를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59조에서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제10조로 개정하려는 것이며.
- 안 제3조제1항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"다음회계년도 5월 10일에서 다음회계년도 5월31"로 개정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O 본 조례안은
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
<u>참 고 자 료</u>

1 지방회계법

제14조(결산의 수행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-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·절 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 지방회계법 시행령

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

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 전 단에 따른 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검사의견서를 첨 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 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